##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409

제출연월일 : 2006년 월 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의료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새로 제정(2005.7.13)된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바뀜에 따라
-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임

## □ 주요골자

-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정함(안 제2조)
  -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(충주)의료원→ 충청북도청주(충주)의료원
- 지방의료원 임원의 구성을 정함(안 제3조)
  - 이사장(원장이 겸임): 1인
  - 이 사 : 6인 이상 10인 이하 ※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
  - 감사:1인
  -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
- 지방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최소 자격기준을 정함(안 제5조)
- 지방의료원의 운영·위탁규정을 명시(안 제6조)
  -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준 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,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의안	전문	- : ·	따를	로 붙	임		
신 • -	구조	문	귀 ¤	日丑	<u>:</u>	해당입	없음
관계년	법령	발	췌	•	따를	2붙임	

##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충청북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(명칭과 소재지)**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  -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
    554-6번지
  - 2.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: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

**제3조(임원)** ①임원은 이사장 1인,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 사 1인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- ②의료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이사장을 겸임한다.
- ③이사는 법 시행령 제9조의 의하여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,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충청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
  - 2.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인
  - 3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  - 4.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
  - 5.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

- ④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4조(이사회)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의 결 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을 포함된다.
  - 1.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  - 2.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  - 3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- **제5조(원장)** ①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.
- ②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2.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3.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4.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, 병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
  - 5. 관련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  - 6.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
- **제6조(권한 및 운영의 위탁)**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

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2.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·수탁기간은 위·수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3.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, 인사, 예산, 회계, 조직 등 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제7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의료원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.
- **제8조(과태료)**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명칭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이를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,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이를 충청북도 충 주의료원으로 본다.
-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,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권리 와 의무 및 재산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승계한다.
- **제3조 (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

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정 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. 다만,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 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 비하고,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4조(임·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「충청북도지방

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충청북 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이 조례 시행당시 「충청북도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및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 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#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(제 8조 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과태료금액
1.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29조제항 제1호	
가.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		300만원
나.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		150만원
2. 법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 상해 또는 기피한 자	법제29조제 항제2호	
가.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		300만원
나.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		150만원
다.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		100만원
라.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		50만원
마.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		50만원

# 關係法令(拔萃)

### [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]

제4조(설립 및 등기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·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, 분원의 설치등기,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5조(지방의료원의 명칭 등)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"의료원"을 붙여 사용한다.

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7조(사업) ①지방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1. 지역주민의 진료사업
- 2.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
- 3.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
- 4. 의료인 ·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
- 5.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
- 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
-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
-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·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·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임원) ①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,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.

- ②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, 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
- ③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④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,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(지역의 보건 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)
  - 2.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
  - 3.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
  - 4.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
- ⑤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.
-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⑨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- 제9조(이사회)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사업계획 및 예산 · 결산에 관한 사항
  - 3. 조직에 관한 사항
  - 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  - 5. 인사·보수·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~⑥생략
- 제10조(원장) ①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.
- ②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

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.

④~⑦생략

제23조(지도·감독 등) ①(생략).

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(생략)

제26조(권한 및 운영의 위임·위탁) ①~②(생략)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제29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- 1.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 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- ③~⑤(생략)

### 부 칙

제2조(지방공사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 한다.

제3조(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

조례로 본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,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·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당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·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·감사 및 이사로임명 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기는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이 법 시행 당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.

#### [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9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추천 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 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- 1.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
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- 3.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
- ②지방의료원의 임원(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)·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(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,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